## 5.1 공통적인 안전조치사항

- (1) 작업시작 전에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2) 관리감독자는 당해 작업의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안전수칙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3) 작업장 내 고압 송전선로, 전기·통신케이블 등 장해물 현황을 사전에 조사 하여 이설하거나 방호시설을 갖추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4) 안전모, 안전대 등 근로자의 개인보호구를 점검하고 작업 전에 보호구의 착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다음 작업 중에 착용여부 및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5)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작업 전에 확인하여 작업배치 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(6) 위험기계·기구의 방호장치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제품으로 교체한다.
- (7) 주탑 거푸집에 사용되는 부재의 재질 및 용접상태, 볼트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8) 작업장 내 공구 및 자재를 정리 · 정돈하여 낙하 · 비래 등의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.
- (9) 중량부재를 크레인으로 인양할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러그(Lug)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10) 이동식 거푸집의 각 부재를 크레인으로 인양할 때에는 인양용 와이어로프를 부재의 2지점 이상에 결속하고 별도의 유도 로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한다.
- (11) 강풍·강우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.